

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‘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’ 도입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‘소가’ 를 ‘소송목적의 값(이하 “소가”라 한다)’ 으로 변경함(안 제 2조제3항)
-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(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)의 30분의 1로 정하되,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봄(안 제18조의3 신설)

4.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별지와 같음

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소가” 를 “소송목적의 값(이하 “소가”라 한다)” 으로 한다.

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(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)의 30분의 1로 한다. 다만,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8년 10월 18일 이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인지의 확인 등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첩부인지액 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(이하 "납부액"이라 한다)의 상당여부를 조사하여 <u>소가</u>,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과 첩부한 인지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며,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첩부된 인지에 소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인지의 확인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소송목적의 값(이하 "소가"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8조의3(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)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(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)의 30분의 1로 한다. 다만, 그 권리의</u></p>

	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711